

# 원리금수취대리 업무협약서

P2P대출업체인 (주)디에셋핀테크대부(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법무법인(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갑"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반환채권에 관한 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부도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폐업하거나 운영하지 못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채권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를 "을"이 대행하는 것을 합의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명백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제 2 조 [업무시기]

"을"이 "갑"의 채권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 ① "갑"의 부도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할 때
- ② "갑"이 회사를 폐업할 때
- ③ "갑"의 요청이 있을 때
- ④ "갑"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정이 있고,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때

## 제 3 조 [업무범위]

"을"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위 채권에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대출자로부터 회수하여 "갑" 또는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투자자에게 전달한다.

## 제 4 조 [업무기간]

"을"은 제2조에 명시된 시기에 위임업무를 시작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원리금이 상환된 뒤에는 채권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권한이 종료된다. 다만, 투자자들이 "을"에게 추심채무 등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부하는 소송대리위임장, 위임계약서 등 별도 계약서에 따른다.

## 제 5 조 [채권추심 위임]

- ① 제2조 제3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이 위임하는 추심채권의 범위(채무관계자, 채무금액 등)는 “갑”이 “을”에게 별도로 교부하는 채권추심위임증서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이 채권 보전조치를 완료한 부동산 및 채권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없이 중복추심 등을 할 수 없다.
- ③ “갑”은 채권추심위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을”에게 위임한다.
  - 1. 채권추심업무수행을 채무자에 대한 소재지 파악 및 재산조사
  - 2. 전화,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변제의 촉구
  - 3. 채무자와의 채무분할상환 협의 또는 변제금 수령
  - 4.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절차에 필요한 사항 자문
  - 5. 관계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부대업무
  - 6. 기타 채권추심위임과 관련하여 특별한 활동이 요구되는 기타업무로서 “갑”과 “을”이 별도 합의하는 업무
- ④ 제2조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을”에게 위임하는 추심채권의 범위 등은 별도로 교부하는 소송대리위임장, 위임계약서 등 별도 계약서에 따른다.

## 제 6 조 [채권서류 등의 인계인수]

- ① “갑”은 추심을 위임하는 채권의 명세서, 위임채권의 권리관계 서류 및 원리금 배분 업무와 관련한 서류사본을 “을”에게 설명한 후 인계한다.
- ② “갑”은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위임시까지 수집한 제반 정보 및 조사기록 등을 “을”에게 인계한다.
- ③ “갑”은 “을”이 채권관계 원본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직원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한다.
- ④ “갑”이 채권추심위임 이후 새로이 발생하여 작성한 추심관련 채권서류는 그 사본을 “을”에게 인계한다.
- ⑤ 투자자가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투자자는 별도의 추심위임증서 작성시 제1항 내지 제4항의 서류를 인계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인계인수장소는 “을”的 영업점으로 한다.

## 제 7 조 [소송대리의 위임]

제2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 또는 투자자가 위임하는 소송대리의 내용 및 “을”에게 지급할 소송대리의 비용은 “갑” 또는 투자자와 “을”과의 별도 합의에 의한다.

## 제 8 조 [추심보수 등]

-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채권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보수는 추심 금의       %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

- ② 투자자가 “을”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채권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보수는 소송대리위임장, 위임계약서 등 별도 계약서에 의한다.

#### 제 9 조 [기간]

본 협약의 효력발생시기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 제 10 조 [계약해지]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본 협약의 제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기타 본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 11 조 [중복추심위임의 금지]

“갑” 또는 “을”은 본 협약에 따라 추심위임한 채권에 대하여 제3자와 동일한 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 제 12 조 [통지사항]

-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을”的 추심업무에 협조하기로 한다.
1. 위임채권을 직접 수령한 경우
  2. 위임채권을 포기 또는 감면한 경우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또는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
  4. 채무명의를 얻은 경우
  5. 채무자와 대물변제, 면책적 채무인수,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6. 위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부터 위임채권에 채권가압류를 당하였을 경우
  7. 채권의 시효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8. “갑”的 주소, 상호 또는 번제금 수령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9.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동조의 규정은 투자자와의 사이에 장래 체결될 추심위임계약 등에도 준용되나, 별도의 소송대리위임장, 위임계약서 등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 13 조 [비밀유지]

- ① “을”은 본 계약을 포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는 일체의 회사정보나 취득한 사실을 본 계약의 목적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갑”的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 ② 전항의 의무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5년간 그 효력을 갖는다.
- ③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갑”的 업무상 정보, 노하우 기타 정책 및 신규사업, 특히,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임직원의 개인정보, 회계정보 등을 동종 또는 경쟁업체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동조의 규정은 투자자와의 사이에 장래 체결될 추심위임계약 등에도 준용되나, 별도의 소송위임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 14 조 [분쟁해결]

- ① 본 계약상 해석상의 이견이 존재할 경우 또는 본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이를 해결토록 한다.
-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갑”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고자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각 계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3. 20.

“갑”      주식회사 디에셋핀테크대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7 36층(대영빌딩)  
              대표이사 조병화



“을”      법무법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5

